

제 안 설 명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경 과

가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나. 제안일자 : 2007년 3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8회 임시회

- 2007년 3월 19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다양화된 행정업무에 대해 소관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한 자문위원을 증원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문위원 증원
 - 전문가 위촉인원 범위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조정 (안 제12조의2제1항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인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전문가를 2인 이내에서

위촉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3인 이내로 증원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기타의견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제안설명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 중 “2인”을 “3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 ①…… …… …… …… 3인 …… ……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54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